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변경처분)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징금 204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1030	업소명	오징어나라
영업자	김계옥/권주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2길 6(도선동)		
위반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처분	기존	과징금 2040만원 부과(영업정지 1개월에 같음)			
	변경	영업정지 1개월(2014.10.27. ~ 2014.11.25.까지)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주무관 **최병희** 식품위생팀장 **정창훈** 보건위생과장 직무 **박진수** 보건소장 **10/22 김경희**

협조자

시행 보건위생과-17842 () 접수 ()

우 133-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 http://bogunso.sd.go.kr
전화 02-2286-7154 /전송 02-2286-7124 / 대시민공개